

활기찬 경남

행복한 도민



경상남도

www.gyeongnam.go.kr

공보

제2580호 2022. 11. 7.(월)

경 남 공 보

제2580호

2022. 11. 7.(월)

공 고

제2022-1809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(안) 행정예고 2

공 고

● 경상남도 공고 제2022-1809호

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“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(안)”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
2022년 11월 7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(안) 행정예고

1. 취지

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규약이나, 부산·울산·경남 3개 시도 합의 결과, 부·울·경 특별연합을 부·울·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2. 공고내용 : [붙임]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(안) 참조

3. 예고기간 : 2022. 11. 7.(월) ~ 2022. 11. 28.(월) (20일)

4. 의견제출

『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(안)』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2022년 11월 28일(월)까지 경상남도지사(참조: 정책기획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간 : 2022. 11. 7.(월) ~ 2022. 11. 28.(월) 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E-Mail 제출(iamrey@korea.kr)

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연락처번호, 제출의견

※ 이 규약안은 경상남도 홈페이지(<http://www.gyeongnam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(경상남도 홈페이지 : 도정소식 → 고시공고)

라. 제출기관 :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

· 전 화 : 055-211-2344 / 팩 스 : 055-211-2319

· 주 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

5. 기타사항

- 행정예고 기한 내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위 행정예고 사항대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(안)을 확정함. 끝.

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(안)

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제목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(안)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

의견제출 내용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	기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경상남도지사 귀하

<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안내문>

- 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항목 : 성명, 현재주소지, 연락처
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(안) 행정예고 관련 의견제출
 -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이용목적 달성 시 즉시 폐기
- 2.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(안) 행정예고 관련 의견제출이 제한될 수 있음

위 항목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으며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2022년 월 일

성명 서명 또는 인